

1. 개정이유

효율적인 용산공원 추진을 위해 조사 및 기록의 작성·보전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**법 제20조제3항**”을 “**법 제57조의3제2항**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단서 중 “**법 제20조제3항**”을 “**법 제57조의3제2항**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**법 제20조제2항**”을 “**법 제57조의3제1항**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·관리 계획)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(이하 “관리센터”라 한다)는 <u>법 제20조제3항</u> 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·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·관리 계획(이하 “유지·관리 계획”이라 한다)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	제5조(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·관리 계획) ① ----- ----- ----- <u>법 제57조의3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)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는 그 유지·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 다만, <u>법 제20조제3항</u> 에 따라 관리센터가 공원시설의 유지·관리에 관한 용산공원의 관	제11조(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57조의3제2항</u> ----- ----- -----

리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관리센터가 이를 정할 수 있다. ② (생략) 제13조(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) <u>법 제20조제2항</u>에 따라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업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	----- ----- 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13조(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) <u>법 제57조의3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--	---